

# 홍보게시물 관리규정

**제1조(목적)**본 규정은 제주한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학내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)**①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 내에 부착하는 모든 현수막 및 인쇄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홍보게시물”이라 함은 구성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정된 현수막 설치대 및 옥내 및 옥외 게시판에 부착하는 현수막과 인쇄물을 의미한다.
2. “현수막”이라 함은 천(형갈)이나 종이를 사용하여 지정장소 및 현수막 설치대에 부착한 것을 말한다.
3. “인쇄물”은 지면에 단색 또는 여러 색도를 이용한 유인물과 싸인펜 등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한 표현물을 말한다.

**제3조(홍보게시물 부착 및 범위)**본 대학 내에 홍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에서 지정한 현수막 설치대, 옥내 및 옥외 게시판에 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 홍보 게시물 부착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에서 주최하는 행사
2. 학생회 및 각 학과가 주최하는 행사
3. 기타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행사

**제4조(홍보게시물의 규격, 색상, 매수)**①홍보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쇄물 : 전 2, 4, 6, 8, 16절지로 제작하여야 한다.
2. 현수막 : 현수막은 설치대의 지정 규격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
② 동일 종류의 게시물은 각 게시판에 1매만 부착하여야 하며, 현수막은 학내 지정된 현수막설치대에 1매만 설치할 수 있다.

**제5조(홍보게시물 게시 승인)**① 교내에 홍보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홍보게시물의 내용, 재질, 규격 등이 면학분위기나 환경미화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승인을 할 수 있다. 단, 담당자의 판단이 불가할 경우 학생복지처장의 유권해석에 따르며, 학생복지처장의 판단이 불가한 경우 총장이 결정에 따른다.

③ 외부기관이 본 대학 내에 홍보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게시기간 및 철거)**① 홍보게시물은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날 오전

9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복지처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행사주관 부서 및 단체의 대표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한하여 게시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.

③ 무단 게시물이나 게시 시간이 경과한 게시물에 한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임의 철거할 수 있다.

④ 게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7조(관리자 임무)**①홍보게시물 관리자는 담당구역의 홍보게시물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②홍보게시물 관리자는 다음 홍보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.

1. “제5조 4항”에 의하여 승인 받지 아니한 홍보게시물
2. 본 대학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부착한 홍보게시물
3. 게시 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
4. 홍보게시물의 내용·재질·규격 등이 면학분위기나 환경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홍보게시물

**제8조(보호 및 책임)**① 본 대학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제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.

② 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은 건설관리본부장 책임하에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.

③ 각 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대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한다.

**제9조(기타)**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